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의'를 '제9조 및 제9조의2의'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를 '법제26조의2 및 지방 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징 수유예를'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의 규정에'를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5장의 규정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제110조의4제2항제3호에서'를 '법제266조제3항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자진납부'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증기애'를 '건설기 계애'로 하고, 동조동항제12호중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 니엄의'를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 엄과 종합체육시설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증기의'를 '건설기계의'로 한다.

제23조중 '법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의 규정에'를 '법제5장의 규정에'로 하고, 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등록세 신고납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중 '법제128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을 '법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3조중 '물 1세제곱미터당 15원으로 한다'를 '물 중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50원, 기타 목욕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